관세사 개인 - 2023년

보험료표

Case선택	Case A - 사고공동부담비율 미적용			Case B - 사고공동부담비율 15%				
보상한도액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1천만원	2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
자기부담금	연간보험료(1청구당/연간총 보상한도액)			연간보험료(1청구당/연간총 보상한도액)				
1백만원	785,000				523,000			
2백만원	704,000	1,089,000	1,258,000	1,370,000	468,000	726,000	835,000	911,000
3백만원	652,000	1,011,000	1,168,000	1,275,000	434,000	672,000	777,000	847,000
5백만원	619,000	967,000	1,071,000	1,148,000	411,000	645,000	712,000	763,000
1천만원	579,000	920,000	1,011,000	1,084,000	385,000	612,000	672,000	721,000
1천5백만원	520,000	823,000	932,000	1,011,000	346,000	546,000	619,000	672,000
		,	,			/	,	
Case 선택		·	응동부담비율 3(·	·	율 미적용 조건	·
Case 선택 보상한도액		·	· · · · · · · · · · · · · · · · · · ·		* Case A,	사고 공동 부담비		<u> </u>
	Ca 1천만원	se C - 사고공	공동부담비율 30 3천만원)% 5천만원	* <u>Case A,</u> * <u>Case B, C</u> 자기부담금	사고공동부담비 - 사고공동부담 -을 초과하고 보	율 미적용 조건 비율 각 15%, 보상한도액을 넘	<u>[</u> 30% <u>조건:</u> 지 않는
보상한도액	Ca 1천만원	se C - 사고공 2천만원	공동부담비율 30 3천만원)% 5천만원	* <u>Case A, .</u> * <u>Case B, C</u> 자기부담금 범위내에서	사고공동부담비 - 사고공동부담 -을 초과하고 5 피보험자의 분	율 미적용 조건 비율 각 15%, 선상한도액을 넘 본담비율 15%(<u>[</u> 30% 조건: 지 않는 B), 30%(C)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Ca 1천만원 연진	se C - 사고공 2천만원	공동부담비율 30 3천만원)% 5천만원	* Case A,* Case B, C자기부담금범위내에서해당금액을	사고공동부담비 - 사고공동부담 -을 초과하고 5 - 피보험자의 5 - 공제하고 보신	율 미적용 조건 비율 각 15%, 보상한도액을 넘 본담비율 15%() 당하여 드립니다	<u>[</u> 30% 조건: 지 않는 B), 30%(C)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1백만원	Ca 1천만원 연7 220,000	se C - 사고공 2천만원 ''보험료(1청구당	공동부담비율 30 3천만원 (연간총 보상한도)% 5천만원 ⁼ 액)	* Case A,* Case B, C자기부담금범위내에서해당금액을	사고공동부담비 - 사고공동부담 -을 초과하고 5 피보험자의 분	율 미적용 조건 비율 각 15%, 보상한도액을 넘 본담비율 15%() 당하여 드립니다	<u>[</u> 30% 조건: 지 않는 B), 30%(C)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1백만원 2백만원	Ca 1천만원 연7 220,000 197,000	se C - 사고공 2천만원 간보험료(1청구당 307,000	공동부담비율 30 3천만원 t/연간총 보상한도 354,000	5 천만원 등액) 385,000	* Case A,* Case B, C자기부담금범위내에서해당금액을	사고공동부담비 - 사고공동부담 -을 초과하고 5 - 피보험자의 5 - 공제하고 보신	율 미적용 조건 비율 각 15%, 보상한도액을 넘 본담비율 15%() 당하여 드립니다	<u>[</u> 30% 조건: 지 않는 B), 30%(C)
보상한도액 자기부담금 1백만원 2백만원 3백만원	Ca 1천만원 연건 220,000 197,000 184,000	se C - 사고를 2천만원 간보험료(1청구등 307,000 284,000	공동부담비율 30 3천만원 */연간총 보상한도 354,000 329,000	5 천만원 =액) 385,000 358,000	* Case A,* Case B, C자기부담금범위내에서해당금액을	사고공동부담비 - 사고공동부담 -을 초과하고 5 - 피보험자의 5 - 공제하고 보신	율 미적용 조건 비율 각 15%, 보상한도액을 넘 본담비율 15%() 당하여 드립니다	<u>[</u> 30% 조건: 지 않는 B), 30%(C)

^{*} 보상한도는 1청구당/연간 총 한도이며, 자기부담금은 매 청구당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무사고 가입 기간에 따른 할인

구분	신규~1년 이하	2년 이상 ~5년 이하	6년 이상 ~ 10년 이하	11년 이상 ~ 14년 이하	15년 이상
할인율	0%	5% 할인	7% 할인	10% 할인	15% 할인

사고자 보험료 할증

보험금을 수령하신 관세사님들은 갱신시 수령보험금 규모에 따라 3개년 할증이 적용됩니다.

보험금 규모	1 년차	2 년차	3 년차
5 백만원 이하	50%	미적용	미적용
5 백만원초과 ~ 1 천만원이하	80%	50%	미적용
1 천만원초과 ~ 2 천만원이하	150%	80%	50%
2 천만원 초과	250%	150%	80%

^{*}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관세사님은 수령금액만큼 감소된 보상한도액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반드시 복원하여야 합니다.

사무원의 부정직행위 담보 특별약관

피보험자(관세사)가 고용한 직원의 부정직(또는 사기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보험기간 중에 발견된 금전적인 손실을 보상합니다.

- 보상한도는 관세사배상책임보험 기본 담보의 50%적용을 원칙
- 가입대상자 명단에 기재된 사무원에 대하여 보장

보상한도액 (청구당/연간총)	자기부담금 (1 청구당)	사무원 1인당 보험료	
1천만원 / 1천만원	50 만원	80,000 원	
	1 백만원	73,000 원	

^{*} 본 특별약관의 1청구당/연간총 한도는 1천만원으로 사무원 1인당 적용되는 보상한도액이 아닙니다.

^{*} 보상한도액 5천만원을 초과하여 가입을 원하실 경우 록톤코리아로 별도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할증기간 중 추가 사고로 보험금 수령 시, 차년도 할증은 기존 적용 할증율과 비교하여 높은 할증율을 적용 (3년간 순차 적용)